

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증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9년 12월 9일

나. 회부일자 : 1999년 12월 9일

3. 제안이유

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개정('98. 12.24, 법률제5,624호)됨에 따라 조례명칭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 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가.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개정에 따라
조례명칭 및 설치목적 변경(제1조)

나. 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명칭을 변경(제2조 제2항)

다.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근거규정 마련(제4조 제3항)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충청북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근거하여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로서 동법의 개정사항과 부합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

□ 조례 제명 개정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

- “충청북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”를 “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”로 개정하고, 조문중 “민자유치”를 “민간투자”로의 용어 정비

□ 위원회 설치 근거 및 기능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보완하는 사항으로

- 위원회 설치 근거조항을 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9항으로 하고
- 조례 제4조 제3항의 위원회 기능중 “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”를 “사업시행자 지정 및 대상사업의 지정 취소”로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※ 붙임 :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